

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8. 10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개정이유

-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,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복무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
-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
-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 도모

2. 주요내용

☐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(안 제5조제3항 신설)

- 지방공무원법 제51조(친절·공정의 의무)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

3. 참고사항

- 지방공무원 복무조례(표준안)일부개정안 통보
[경상북도 자치행정과-11829(2008.9.11)] 호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친절·공정”을 “친절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제5조(친절·공정)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分別하고,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, <u>친절·공정</u>하고 신속·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조(친절·공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친절</u>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u>	문구수정 항목신설

참 고 자 료

- 지방공무원법 제51조(친절·공정의 의무)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한다.